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제정	1981.	7.	1	훈령 제28-1호	
개정	1983.	5.	2	훈령 제 36호	
	1984.	4.	19	훈령 제 52호	
	1987.	8.	4	훈령 제 63호	
	1990.	5.	15	훈령 제 84호	
	1996.	10.	19	훈령 제 164호	
	1999.	12.	17	훈령 제 202호	
	2004.	10.	4	훈령 제 245호	
	2008.	6.	16	훈령 제 273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일부개정	2011.	3.	10	훈령 제 301호	
일부개정	2012.	8.	30	훈령 제 317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3.	8.	1	훈령 제 329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3.	12.	12	훈령 제 335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4.	8.	14	훈령 제 338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5.	5.	28	훈령 제 351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6.	12.	29	훈령 제 382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8.	2.	2	훈령 제 394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18.	5.	31	훈령 제 397호	
일부개정	2019.	6.	25	훈령 제 406호(동 사무전결 사항 규정)	
일부개정	2019.	12.	20	훈령 제 411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0.	12.	22	훈령 제 416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1.	6.	10	훈령 제 420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3.	10.	10	훈령 제 439호(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통합방위세부시행지침」에 의하여 광명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평시 군·경·관·민 향토예비군과 민방위대등 각종 방위요소의 통합작전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적의 침투·도발·위협 및 우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2. 17, 2008. 6. 16>

제2조(설치) 지원본부는 광명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하는 기구로서 협의회 안에 설치한다. <개정 99. 12. 17>

제3조(구성) ① 지원본부는 지원본부장, 종합상황실,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본부장은 시에는 부시장, 동에는 동장이 된다.

③ 종합상황실은 상황실장, 반원 및 분야별 지원반의 대표로 구성한다.

④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은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

보 작전요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육군 제2506부대 2대대 작전장교 또는 광명경찰서 경비과장으로 하며 운용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평시: 광명경찰서장

2. 사태발생시: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⑤ 분야별 지원본부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지원본부구성: 별표 1 참조

2. 동 지원본부구성: 별표 2 참조

⑥ 각 분야별 지원반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능별 지원반장과 지원반으로 구성 운용하며 각 분야별 지원반장은 지원반원을 지휘·감독한다.

⑦ 각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 내 제요소가 공동참여하며 지원계통별 하부조직을 활용한다.

제4조(통제) 각 분야별 지원반은 종합상황실장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보고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지원본부 구성 및 분야별 지원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 12. 17, 2011. 3. 10〉

1. 지원본부

가. 통합작전 및 각종 우발사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나. 국가동원업무의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조정·통제·지원한다.

다. 민방위사태를 지원한다.

라. 향토예비군 육성 사업을 지원한다.

마. 기타 협의회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을 시행한다.

2. 지원본부장

가.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나.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다. 예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를 지휘 감독

라. 각 분야별 지원반 업무의 협조 및 조정·통제

마.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 및 협조체제를 유지

바.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긴급상황 또는 우발상황 발생시 즉시 지원태세를 유지

사. 각 분야별 주요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관리

3. 종합상황실

가. 각종 상황을 파악 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나. 신속 정확한 경보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및 지원지시

라. 통합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방위협의회에 건의

마. 예하 행정관서의 지원본부 종합상황실 지휘 감독

바. 통합적인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사.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지원본부에 전파

아. 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합동상황실에 통보

자. 충무 3중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4.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

가. 정보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보업무를 관장

나. 신속·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

다. 군·경 작전상황 종합분석·판단·건의 및 조치

라. 종합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제공,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마. 군 및 경찰작전 상황의 종합상황실 통보 및 협조

바. 주민신고 업무를 관장

사.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통신망 조정·통제 및 건의

5. 총괄지원반

가.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지원회의 관장

6. 인력·재정 동원 지원반

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업무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나. 예비군·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다.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 소요량 파악

-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을 준비 및 지원
 - 마.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
 - 바. 주민통제 업무 관장
 - 사.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 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예산 결산
 - 자.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7.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 가.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 지원업무 관장
 - 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 다. 실비변상 및 회수·반환업무 관장
 -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지원
 -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업무 관장
 - 바. 차량통제
8. 의료·구호지원반
- 가.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 나. 의료·구호조를 편성 운용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지정 조정·통제
 - 다. 급수 및 방역업무 시행
 - 라.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수행
 - 바.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가료비 지원업무 수행
9. 통신·전산 지원반
- 가. 통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 나. 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운용
 - 다. 종합통신 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 라. 통신지원조 편성·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 마. 국가동원계획에 의한 통신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 바. 관·군·경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
- 10. 보급·급식 지원반
 - 가. 보급 및 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동원 병력급식 및 보급지원 업무 관장(별표 3참조)
 - 나.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지원
 -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물자 동원집행 준비
- 11. 홍보지원반
 - 가. 홍보 계획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 나. 홍보매개체 조성·통제 및 홍보반 편성 운영
 - 다. 국가동원계획에 의한 홍보매체 동원집행
 - 라. 군사작전 홍보지원계획 수립시행
- 12. 삭제 <2011. 3. 10>

제6조(직무) 지원본부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부장: 지원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원본부를 대표한다.
2. 종합상황실장: 본부장을 보좌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하며 본부장 부재시 본부장을 대행한다.
3. 지원반장: 지원본부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본부장 지시사항을 집행하며 본부장 및 종합상황실장 부재시에는 편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지원반원: 지원반장의 지시에 따라 지원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분야별 지원반장 부재시에는 그 반의 선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근무)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조는 종합상황실 및 지원반의 실정에 따라 2교대 또는 3교대로 편성 운용한다.

제8조(회의소집) ① 지원본부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부대 합동훈련시 또는 방위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와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지원본부 회의에는 종합상황실장과 종합상황실요원 전원 및 분야별 반장이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 분야별

반원 전부 또는 일부를 참석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19 훈령 제16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2. 17 훈령 제20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0. 4 훈령 제245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16 훈령 제273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0 훈령 제30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30 훈령 제317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자치행정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과 “정책비전팀장”, “기획팀장”, “위생관리팀장”을 삭제하며, “자치행정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재난하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민간협력팀장”을 “재난시설팀장”으로, “농축정팀장”을 “도시농업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3. 8. 1 훈령 제329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종합상황실 실장란의 “건설교통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하

고, 총괄지원반 반장란의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2013. 12. 12 훈령 제335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재난안전팀장”을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4. 8. 14 훈령 제338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정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시민안전국장”으로, “경제유통팀장”을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5. 5. 28 훈령 제351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반장	· 광역도로과장
반원	· 건축행정팀장 · 행정지원팀장 · 도로시설팀장 · 교통대책팀장 · 교통체계개선팀장

부칙 <2016. 12. 29 훈령 제382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행정지원팀장”을 “도로행정팀장”으로, “교통체계개선팀장”을 “교통 시설팀장”으로 “보건사업과장”을 “시민보건과장”으로, “예방의약팀장”을 “의약 무팀장”으로, “문화팀장”을 “문화중무팀장”으로 한다.

부칙 <2018. 2. 2 훈령 제394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란의 “광역도로과장”를 “도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8. 5. 31 훈령 제39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5 훈령 제406호, 동 사무전결 사항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괄 지원반의 “사무장”을 “행정팀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9. 12. 20 훈령 제411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의료·구호 지원반	홍보과장	의료·구호 지원반	홍보과장
반장·시민보건과장	반장·홍보실장	반장·보건행정과장	반장·홍보담당관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2020. 12. 22 훈령 제416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현 행	개 정 안				
<table border="1"> <tr> <td>의료·구호 지원반</td> </tr> <tr> <td>반장·보건행정과장</td> </tr> </table>	의료·구호 지원반	반장·보건행정과장	<table border="1"> <tr> <td>의료·구호 지원반</td> </tr> <tr> <td>반장·감염병관리과장</td> </tr> </table>	의료·구호 지원반	반장·감염병관리과장
의료·구호 지원반					
반장·보건행정과장					
의료·구호 지원반					
반장·감염병관리과장					

부칙 <2021. 6. 10 훈령 제420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23. 10. 10 훈령 제439호,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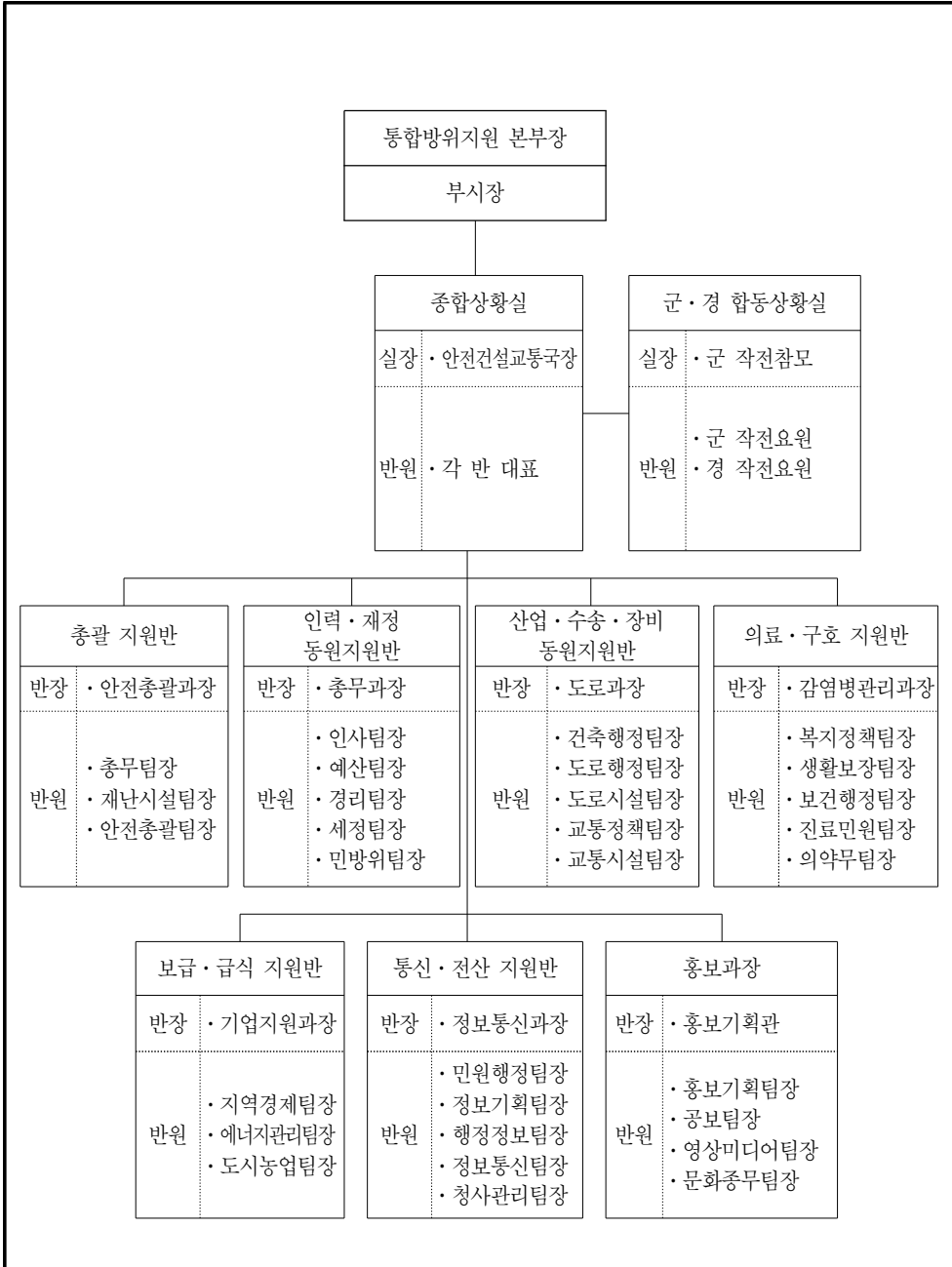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 ⑤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반장란의 “홍보담당관”을 “홍보기획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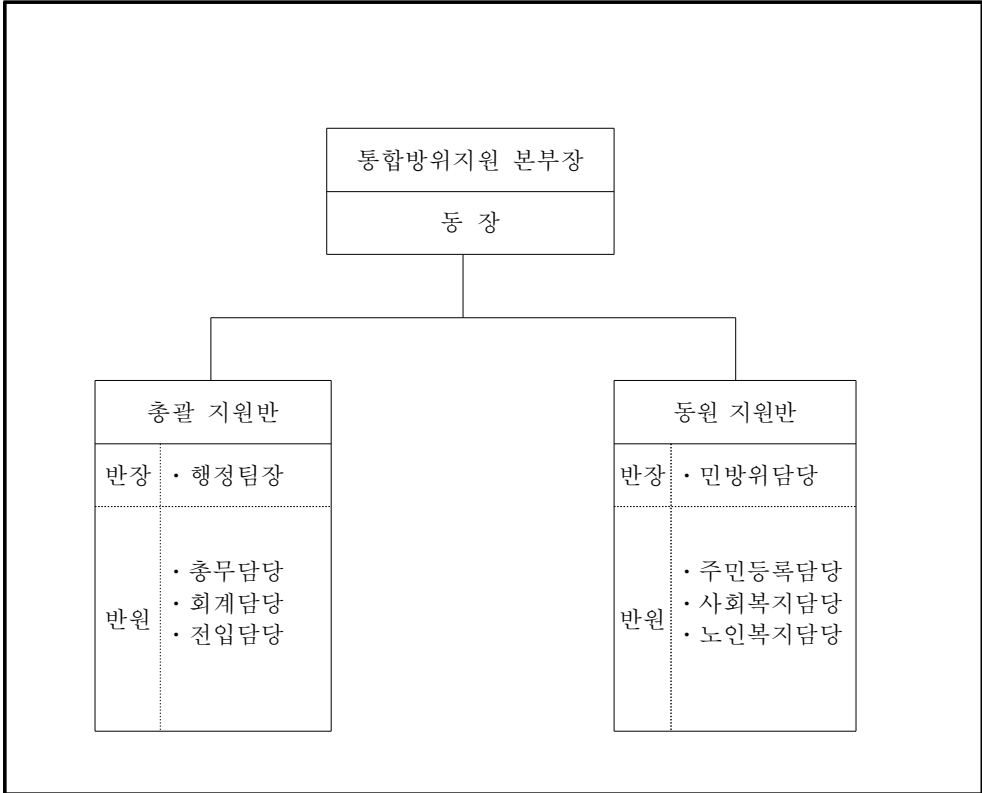
[별표 1] <개정 2023. 10. 10>

광명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별표 2] <개정 2019. 6. 25>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별표 3]

작전동원병력 급식지원 절차

